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313
----------	------

제출년월일 : 2009년 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제4항에 의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조례안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등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이용요금(조례안 제6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 운영관리(조례안 제7조)
 -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재 위탁 할 수 있음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

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함

○ 수탁자의 의무(조례안 제8조)

- 보조금 및 차량을 사업목적에만 사용할 것
- 운송거부 금지 및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요금 외 징수 금지

○ 위탁의 해지(조례 안 제9조)

-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탁자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4. 의안전문: 불임

5. 관계법령: 불임

-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관련법령1부.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1부.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서 규정한자를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휠체어를 탄 1급 또는 2급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 이용시간, 이용요금 사용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제천시보와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외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차량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장비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장비의 신설 및 변경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대상자의 운행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요금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제9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제8조 규정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9071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 ①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4호]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휠체어기증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8.9.3 대통령령 제20987호]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 기관의장을, "수탁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 2008.1.4 조례 제827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7. 4. 13>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8 - 1051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 31 .

제 천 시 장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레 명 :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제4항에 의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조례안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등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이용요금(조례안 제6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 운영관리(조례안 제7조)

-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재위탁 할 수 있음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함

○ 수탁자의 의무(조례안 제8조)

- 보조금 및 차량을 사업목적에만 사용할 것
- 운송거부 금지 및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요금 외 징수 금지

○ 위탁의 해지(조례 안 제9조)

-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탁자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2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교통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641-5262, (FAX) 641-5299, 담당자 : 이현우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지방행정주사	교통행정팀장	교통과장			
이현우	한을환	11/24 박성웅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제정(안)
2. 공고번호: 제천시공고 제
3. 공고기간: 2008.10.31-11.20 (20일)
4. 공고매체: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별도 붙임
6. 공고결과
 - 조회수: 129회
 - 의견게시자: 없음

붙임 공고안1부.(별첨). 끝